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u>이용허락규약(Legal Code)</u>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국제학석사학위논문

한국 축첩 관습 폐지에 관한 연구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이 연

한국 축첩 관습 폐지에 관한 연구

지도 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이 연

이연의 국제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8 월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초 록

이 연구는 근대 한국에서의 축첩 관습 폐지 과정에 대하여, 1920년

대 신여성으로부터 시작되어 1950~1960년대 법 개정을 위해 사회운동을

벌인 초기 한국 페미니스트들의 활동까지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었다.

1922년부터 1962년까지 축첩반대 투쟁을 벌인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들이 축첩 관습 폐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는지와 같은 핵심 쟁점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뉴스, 잡지,

법 제정 과정 속기록 등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해당 과정은 1920-1930년대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시작한 계

몽 단계, 식민지 근대 법제화에 의존한 단계, 그리고 젠더 정치의 힘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여권신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여성운동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세 단계의 투쟁 끝에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진행된 사회 운동은

정부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운동가들이 주도한

사회 운동은 축첩 관습의 종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주요어: 축첩, 축첩제 폐지, 근대성, 신여성, 젠더정치

학 번: 2021-24716

Ш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5
	제 3 절	연구방법 및 자료	8
제	2 장 식	민지 시기 축첩 반대의 시작	10
	제 1 절	여학생, 신여성, 자유연애	10
	제 2 절	사상계: 신문, 사설, 잡지	19
	제 3 절	소결	23
제	3 장 축	첩 반대 관련 법제화 시도 ·····	25
	제 1 절	식민지 시기 사법관념의 전환	25
	제 2 절	해방 후 1960년대까지 폐첩 법제화 쟁론	31
	제 3 절	소결	39
제	4 장 ㅎ	배방 후 여성 단체의 축첩 반대 운동 ·········	41
	제 1 절	축첩 공무원•교원 축출운동	41
	제 2 절	여성 단체의 신민법 개정운동	47
	제 3 절	소결	50
제	5 장 결	론	51
참.	고문헌·····		54
Δh	etract·····		5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1. 첩 신분과 신분제 사회

신분제 사회는 양천지별과 같은 신분의 위계질서가 가정 내에서도 존재하는 사회다. 첩은 바로 '사회에서의 차등적 신분'에서 '가족에서의 차등적 신분'으로 침투되는 산물이다. 첩 신분은 '가정 내의차등적 신분'으로써 질서이탈 여성에게 징계를 부여하는 동시에 생식의 수요를 만족시켜 부계혈연의 지속을 보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첫째, 첩 신분은 기존 혼인질서를 이탈한 여성에 대한 징계 수 단이다.

첩의 정의는 유학 경전인 「예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禮記 • 內則」에서 '聘則爲妻,奔則爲妾'를 통해 첩의 성격을 규명한 바와 같이, 등급과 신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신분제 사회에서 남 녀간의 결합이 빙(聘)을 통해서, 즉 지정한 의례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여자의 '처' 신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욕망을 충실 하며 분(奔)하는 여자는 사회질서에서 이탈하는 자로 간주되어 부인이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첩의 성격을 "노비로서 노동하는 동시에 몸 까지 남성 주인에 의해서 향유하는 재산이다" 라고 평가할 연구가 있었을 만큼, 처와 첩의 차별은 심각했다.

첩 신분은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자유' 추구와 직결되어 있었다. 욕망, 또는 욕망을 총족시킬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추구는 개인에게 도덕적 비난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인이었으므로, 덕목 수준에 따라가족집단 안에서 처보다 훨씬 낮은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기능주의적 측면에서, 첩의 존재는 부계혈연의 지속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혼인은 부계 혈연에서 사유재산을 안전하게 계승하기 위한 제도였다. 따라서 첩의 존재는 이 측면에서 처의 생식기능이 발휘할 수 없을 때의 보완 장치와 비슷하다. 다만 적서 차별이 존재하여, 첩 소생 자녀는 서자녀로서 첩처럼 차등적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 첩 소생 자녀는 소속권을 가질 수 없어 출세 또는 관직 승진에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는 부계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적처와의 결합을 제1순위로 삼는 것을 뜻한다.

2

¹ 李笑野, XiaoyeLi.(2010).释《周易》中"妾"的观念.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01),33-37.

셋째, 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의 문제였다. 첩은 실제로 처의 차등적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첩'의 존재는 한반도 역사의 변천과 함께 변화를 겪었다.

고려 시대의 처첩구분은 엄격하지 않아, 상위급 귀족과 문무관원들 중의 많은 수가 여러명의 처를 드는 동시에 적처(嫡妻)과 서처(庶妻)를 구분하였다. 조선 왕조에 들어서서 유교사상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정착한 후, 태종 13년에 '예가무이적(禮家無二嫡)'에 따라 중혼금지법이 반포된다. 즉 첫 번째 처와 혼인을 맺은 뒤 다시 처를 맞이할경우, 남편은 처벌을 받게 되고 후처는 법적으로 처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첩으로 강등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적처가 유일해짐에 따라, 첩의신분과 기능은 더욱 명확해졌다.

2. 근대의 첩 문제

신분제 사회 이후 근대사회에서의 첩 문제는 근대성, 여성, 혼 인, 민족국가의 교차점에 있었다.

전근대 사회의 첩이 신분제와 재생산수요에 따른 기형적 산물이라고 한다면, 근대에 들어서 첩은 오히려 전통을 계승하면서 자유연애과 결합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구한말 시기 조선에는 보편적

으로 조혼의 풍습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조혼 금지 등 일련의 사회 풍습 개조 운동이 시작되었고, 선교의 자유화로 확산된 서구사상과 식민지 통치에 의해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자유결혼을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첩, 혹은 '제이부인'의 상당수들은 당시의 조혼한 지식인들과 스스로 제이부인이 되기를 선택한 신여성들이었다. 한편으로는, 개항과 통상의 자유가 개방되면서 굴기한 상인 계층들이 여러 명의 첩을 들이면서 부를 뽐내는 수단으로 축첩 관습을 사용하기 도 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사회전환기의 '자유연애'의 이념과 이행 간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에서 축첩 관습에 대한 역설적 현상을 토대로, 본연구는 축첩 관습의 폐지가 몇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며 각각 어떤이유로 실패했는지, 축첩 관습 폐지 논의의 제기자와 주장이 시대에따라 어떻게 달라졌으며, 결과적으로 축첩 관습의 폐지가 최종적으로이행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함유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사의 시각으로 축첩 관습 폐지를 양성 간의 권력투쟁으로 간주하여, 근대 민족국가와 근대 사회의 변천 과정 속에서한국 여성의 권력 신장 역사의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근대 한국의 축첩 폐지 과정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그과정에서 나타난 각 시대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축첩 관습은 유교 문화권의 국가에서 공유되어진 긴 역사를 지닌 가족•혼인 제도의 일부지만,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역사 연구 또는 한국학 연구에서 모두 중시되어 있지 않았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는 축첩을 '축첩제'로 명시한다. 하지만 법제적 의미에서 축첩은 하나의 제도로서 승인된 적이 없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축첩 관습'으로 칭할 것이다.

다음,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3 가지 시각에서 축첩 문제를 관 찰했다.

첫 번째는 '신여성 연구'라는 여성 연구 및 근대사 연구의 융합적 연구 시각이다. 신여성 연구에서 축첩을 중심 주제로 삼은 논문수가 적으며, 대부분의 논문들은 제이부인이 된 신여성의 모순성에 주목했다.

근대 여성 의제와 관한 기존 연구는 근대 신문 및 잡지, 신소설 등 매체를 통해 근대 여성 교육, 근대적 혼인, 연애 담론, 신여성의이미지를 분석하여 근대성, 즉 '신(新)사회'로 주제하고 '신여성'을 관찰하는 Kim Keong-il (2014), 김경남(2021), 이영수(2012) 등의 연구로대표되는 다양한 논문이 존재한다. 학계에서 제이부인을 평가하는 관

점은 신영숙(1986)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이부인은 호칭상으로 첩의 신분을 미화시켰을 뿐이고 그의 본질적인 성격은 여전히 봉건적이다는 입장이 있다. 축첩 폐지, 과부 재가의 사회적 금기, 공창제폐지 등 과거 전통 시회에서 남겨진 '구(舊)문제'의 소멸과 폐지 과정에 대한 고찰은 정경은(2012), 전미경(2001)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법제화 시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축첩 관습을 가족•혼인 제도의 일부분으로써, 축첩의 법제적 금지를 국가법제 중 혼인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바라본다. 대표적인 법제적 시각으로는 마정윤(2016), 1950 년대 축첩에 대한 제도적 폐지의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 1950 년대까지 여성과 관련한 법 제정 과정에서 문명 세계의 일원으로서 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한국사회의 역동을 보여주었다. 첩의문제는 원래 가족의 사적인 문제이었지만, 해방 이후 '문명'의 개조가이루어지며 국가의 개입이 발생한 것이다.

법제화 과정에서 첩 문제과 관련한 주체는 국가와 국민 개인이며, 권력의 개입 관계에 대한 고찰이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인 관점은 박은숙(2017), 축첩 문제를 개인의 '사'적인 일로 판단하면 축첩 권리를 견지하는 입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축첩 금지를 통해 국가-사회-가족의 권력 개입 관계를 관찰한 내용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

성계 시민의 힘으로 역부족이었다. 국가기구에 의존하지 않은 이상, 축 첩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에 대한 고찰이다.

계몽 의식과 기독교 전입의 관계에서 축첩 관습 폐지의 원동 력을 찾는 연구가 있다. 대부분 기독교와 근대화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의 영향으로 축첩을 혼인 풍속의 변화에 포함시켜 다룬 논문들 이며(오지석, 2021; 이숙진, 2014 등), 해당 연구들이 개화기에 집중되 어 있어 해방 이후 축첩 관습 폐지를 다시 논의거리로 만들었던 폐지 운동의 주요 추진자에 대한 주목(이행미,2021; 마정윤,2016)은 보다 적은 편이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의 타임라인을 살펴볼 때, 축첩에 대한 연구의 시대적 배경을 개화기(1860-1910), 일본 식민지 시기(1910-1945)중 1920-1930 년대², 해방 이후 1960 년대까지 3 시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쟁 시기 및 1960 년대 이후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즉, 기존 문헌들의 경우 축첩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배제한 상황에서 특정 시대에 대한 고찰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재편성을 통해 보다 완전한 타임라인에서 근대의 첩 문제를 다룰 것이며, 여성사의 시각에서, 신여성의 계몽, 법제화의 참

 $^{^{2}}$ '계몽기'라고 지칭하는 연구가 있다. 전미경. (2005)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 참조.

여 및 축첩폐지의 사회운동 등 3 가지 단계에서 여성계의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앞선 기존 연구에서는 다른 시대, 다른 주체들이 각자에 대한 축첩 반대를 분석하였으나, 축첩의 최종적 폐지 원인을 지적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계승하여, 더 풍푸한 사료를 이용하며 근대 축첩의 시말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이 었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타임라인을 확장하여, 개화기 이후 1960년대까지 연대별로 축첩 반대 사상 또는 폐지 운동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역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본문은 신여성의 계몽, 법제화의 참여와 축첩 폐지의 사회운동등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여성계의 활동 타임라인에 따른 축첩 폐지의 시말을 분석할 것이다.

제 2 장은 신여성과 신문잡지 등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축첩 반대 사상을 분석했다. 각 시대의 특징에 따라, 개화기 당시의 사상과 여론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의 신문 기사(『동아일보』, 『자유신문』, 『경향신문』 등), 잡지(『신여자』, 『신여성』, 『동광』,『여원』등)을 통한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제 3장에서는 일본 식민지 시기 및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축첩 폐지 법제화의 시도를 재고찰하기 위해 법적 개혁과정에 관한 입법회의 속기록 및 신문을 확인하는 한편, 잡지에서 등재한 평론과 판례 기사에 대한 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제 4장에서는 1950~1960년에서 여성 단체가 주도한 '첩둔자' 낙선 운동을 분석할 것이다.

제 2 장 식민지 시기 시민사회 축첩 반대의 시 작

제 1 절 여학생, 신여성, 자유연애

1 여학생의 등장

여학생은 근대 교육을 받은 여자 학생을 지칭함으로써, 새로 운 여성 집단의 탄생을 의미한다.

조선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근대적 여학교는 1886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 그리고 1887년에 설립된 정신여학교등 선교 여학당이었다.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민간 여학교는 1898년 조선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부인연합단체인 찬양회에 의해 설립된 순성여학교이었다³. 박영호, 유길준, 서재필 등 개화파의 여성교육론은 남녀평등의 사상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근대적 한국과 '근대적 현모양처 만들기'를 위해서 여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그들의 주장은 조

³ 한정신. (2005).한국 사회와 여성 교육,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연구실, 120쪽-121쪽.

⁴ 박용옥. (1984). 한국근대 여성운동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치·경제연구실, 31 쪽-55 쪽.

선왕조 시대의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넘어서 여성을 근대적 국민의 일 분자로서 인정해주었지만, 여성을 근대적 국민의 어머니, 근대적 국민 의 아내가 되는 것의 굴레 밖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1908 년 4월 4일에 반포된 고등여학교령에 따라, 여성의 교육 권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었다. 칙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교육 목표는 전통여성이 필요한 기예를 강조하고 있다. 국어(한문), 역사, 지리, 산수, 이과 등 일반 과목 외에 재봉, 가사, 수신 등 가정적 성 역할 양성을 위한 과목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⁵. 이를 통해 여학교의 교육 목표는 강한 시대성을 갖고 있다. 남녀가 모두 평등적으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성이 근대적, 개화적 현모양처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목표에 더 가깝다.

근대적 현모양처라는 교육 목표는 일본 식민지 시기에서 연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교육에 있어 더욱 강조되었다. 1910년 이후일본 식민 통치 하에 여성에 대한 속박은 더 강해진 한편, 조선의 여성교육 목적이 민족의 자강으로 바뀌어가면서도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자녀 양육과 가정 경영 등 가정 내 영역에서만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⁵ 學部令 第2號 「高等女學校令施行規則」. 국사편찬위원회. 2011.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제2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mh_002_0 070_0010_0080_0150, accessed 2023.03.30

남성 지식인은 여성의 담론 참여 과정에서도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아내'를 강조해왔다⁶.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시기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권을 받았고 지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⁷. 물론, 그들 사이에는 계급과 가산의 차이가 존재했다. 중등교육을 받은 이후 고등교육 또는 해외유학을 다닐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여성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계속 받고 싶던 일부 상류층 여성은 일본 또는 구미 등 지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⁸. 이는 '신여성' 단체 탄생의 배경이었다.

2 '신여성'이라는 단체

이러한 배경하에서, 1920-1930 년대에 화제가 된 '신여성' 들이 신문 잡지 등 여론 상에 등장했다.

조선의 신여성이라는 단체는 1920~1930 년대에 나타난 중•고 등교욱을 받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⁹. 19 세기 말부터 20 세기 초까지

⁶ 박정애. (2000).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여성과사회, (11), 46 -63.

⁷ 보통학교의 여학생 수는 1919년 378명에서 1935년 2236명으로 증가했다. (한정신, 2005)

⁸ 조선의 여자 일본 유학생 수는 1910년대에 늘어나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 서 40명이상의 수준을 유지했다. 1922년에 88명에 달했던 적도 있었다.(박정 애, 1999)

⁹ 일부 학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안 받았지만 사회진출을 통해서 같은 여성해

세계 각국에서 신여성(New Woman) 현상이 발생했으나¹⁰, 조선의 신여성 현상은 식민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식민 통치와 가부장제의 이중적 억압 등의 원인으로 구 사회질서에 저항하기도 어렵고 민족 해방에 기여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운 곤란한 국면에 있었다¹¹.

신여성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극소수의 존재였지만, 대부분 유학생 출신이었던 그들은 일본 등 많은 국가의 여성 해방 사조를 조선으로 유입시켰다.

1920년 여성 잡지 『신여자』의 창간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들의 이념을 전달했다.

방 이념을 갖고 있는 여성도 신여성의 범주에 속한다. 김경일 외 (2015)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출판.5~7쪽.

¹⁰ 신여성은 빅토리아 시기 영국에서 주로 여성 소설가로 대표되는 New Woman 이라는 단체였고 일본에서는 新しい女, 중국에서는 新女性 (xīn nǔ xìng) 라고한다. '신여성'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일본의 平塚雷鳥 「自分は新しい女えである」(『中央公論』 1913 年 1 月号) 부터 유행한 것으로 본다 (茂呂美耶. (2015). 大正日本: 百花盛放的新思維, 奇女子 台灣: 遠流出版.; Choi, Hyaeweol. (2013). New Women in Colonial Korea: A Sourcebook / Compiled and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Hyaeweol Choi.); 조선의 신여성 현상이 중국 또는 인도의 상황과 비슷하여 식민지의 역사성을 지닌다는 연구가 있다. (김 수진. (2006). 신여성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1), 185-230.)

¹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 치. 1920-1934.

改造! 이것은 오년간 참혹한 표탄 중에서 신음하던 인류의 부르짖음이요¹². 解放! 이것은 累千年 暗暗한 반중에 갇혀있던 우리 여자의 부르짖음입니다. 무엇무엇 할 것 업시 통트러 사회를 개조하여 야겟습니다. 사회를 개조하라면 먼저 사회의 원소인 가정을 개조하여야 하고 가정을 개조하라면 먼저 가정의 주인된 여자를 해방하여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¹³

「창간사」 『신여자』 1920.3 창간호

상기 발췌문에는 사회•가정•여성의 연결고리에서 '개조'와 '해 방'이 핵심적인 몫이며, 여성의 사상 해방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당시조선의 '개조' 주장은 사회주의 사조에 의한 것이 아닌 문화주의 개조론을 이용한 것이었고, 민족의 개조를 통해서 조선을 더욱 근대화시키는 목표가 있었다¹⁴. 그들의 개조는 여성이 전부터 활동해온 가정의 영역부터 시작하고자 했다.

그들의 이상적인 결혼과 근대적 가정의 모습은 '스위트 홈'이었다. 구식의 대가족과 달리, 부부애를 찬양하며 결혼을 가족 간의 결합이보다 부부간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자유연애, 자유결혼, 소가정(스위트 홈)에 대한 추구를 통한 기존의 '낡은 질서'에 대한 도

^{12 &#}x27;참혹한 폭탄'은 제1차 세계대전을 지칭한다.

¹³ 당시 철자법으로 원문을 인용함. 이하 모두 인용문은 원문의 철자법을 그대로 인용한다.

¹⁴ 일본 문화주의론자의 관점에서 정의된 '개조'는 사회진화론의 의미를 담고 있음으로 민족의 성질 및 세게 진출의 자격과 직결된다. 김수진. (2009). 앞의 책220~221쪽.

전은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신정조론'/ 성해방등의 관점과 행위로 당시 사회에서 파문을 일으켜 냉시와 조소의 대상이 된 일면도 있었다¹⁵. 『신여성』의 주필인 김원주의 신 정조론은 성도덕에 대해서 정결이라는 개념이 여성에게만 부여한 것이 '우리의 인격과 개성을 무시하는 재래의 성도덕'이라고 비판하면서 '열렬히 반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조과 도덕을 분리시키고자 했다¹⁶.

3 신여성과 '제이부인' 문제

1920~30 년대의 여학생, 여성지식인 계층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혼인/연애생활도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추구한 그들은 '제이부인'이라는 명분으로 지식인 또는 관료 남성의 배우자가 된다. 제이부인의 성격에 대하여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를 첩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다른 집단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쟁론이 있었다.

-

¹⁵ 신여성 잡지의 집필인인 조선 최초의 유화가 겸 작가 나헤석은 「이혼고백 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¹⁶ 김원주, 「신년 벽두에 조선 여자에 대한 余의 소망」, 『매일신보』 1921 년 1월 9일~10일자

학계에서 제이부인을 평가하는 관점은 신영숙(1986)와 같이 재이부인은 호칭을 이용하여 첩의 신분을 미화시켰을 뿐이고 그 본질적인 성격은 여전히 봉건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 있다¹⁷.

당시의 조선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잡지 『신여성』에 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제이부인문제 특집」을 한 호에 넉넉한 분량으로 수록하여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¹⁸.

전희복의 「제이부인 문제 검토(第二夫人問題檢討)」에서 제이부인은 구식 결혼제도의 '인습'에 의한 희생자라고 본다. 그는 두 젊은사람이 '연모하며 이해 및 동정하는 품이 부부로 전환되기에 충분할만큼 원만하고 완전하다'는 관계에서 단지 '그 남자는 기혼자'일 뿐이며,따라서 자유연애와 인습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무고한 여성들을 '첩'이라 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⁹.

다른 저자는 제이부인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이익상은 이는 '여성을 노예 시하는 모육적인 칭호'이고, '첩의 천명을 제이부인이라는 미명으로 대하여', '엄이도령掩耳盜鈴'과 같은 것이라고 강력히 부정한다²⁰. 모윤숙, 김활란 등은 '진정한 연애'의

¹⁷ 신영숙, (1986). "일제하 신여성의 연애•결혼 문제", 『한국학보』 12-4, 18 2-217쪽.

¹⁸ 『신여성』 제7권 제2호 1933년 2월

¹⁹ 全禧福, 「第二夫人問題檢討」, 『신여성』, 위와 같음.

²⁰ 李益相, 「稱號부터不可當」, 『신여성』, 위와 같음.

유무 또는 금전에 대한 탐욕으로 '첩/제이부인' 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²¹. 단지 진정한 연애,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이여야 근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제이부인이 첩인가 아닌가의 이분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아무리 정열이 백도에 도달하였다'고 해도, '형식적인 본처가 존재한다면 그 애정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남성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제이부인을 두는 남성을 지적한 자도 있다²².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는 남녀 간의 권력관계에 있다.

남성은 이 게임에서 권력의 주인이자 향유자였다. 이혼을 하지 않고 '첩/제이부인'을 두는 남성, 그들은 이혼을 못하든 또는 이혼을 원하지 않든 결국 최대의 수혜자였다. '제이부인' 여성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근대적 신 생활양식을 품기 위해 첩이라도 되겠다는 방식으로 자신이 이용당할 것을 알면서도 남성에, 그리고 남성들이 영위하는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타협했다는 것이다. 그 타협이 성립할 수 있는 이

17

²¹ 毛允淑, 「女子의意識 薄弱을象徵」, 『신여성』, 위와 같음.

²² 朴花城, 「階級解放이 女性解放」, 『신여성』, 위와 같음.

유는 바로 그들의 희망한 것처럼 자유연애, 자유결혼을 실현해준 대상 인 '근대적 남성'이 부재한다는 데에 있다²³

신 지식인 여성 작첩은 '알면서도 타협한 선택'이다. 개인 의지와 도덕을 넘어서, 당시 조선 사회 근대성이 미비한 일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²³ 정지영, (2006).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第二)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핸위성", 한국여성학 제22권 4호. 47-87쪽.

제 2 절 사상계: 신문, 사설, 잡지

근대 매체가 유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조선에서 축첩관습이 수천 년간 존재한 중국 사회의 변혁은 조선 지식인의 관심을 이끌었다.

… 蓄妾制度의 發端을 論하건대 하나는女子賤待하는 觀念이며, 하나는 早婚의 餘弊라. 在來의 男子가 女子의게 對한 待遇가 如何하였나 뇨. 그自由權利를 否認하였스며 그平等地位를 不許하였으나니 그럼으로 女子는 男子의 所有物이되여 … 一夫多妻의 制度를 發生케하였스며 … 在 來의 婚姻은 男女兩性의 至情으로 된것이 안이라, 父母의 子婦가되여 供 養을 奉하며 使令에 應하야 家族의 發達을 助成하는 機關이 됨으로 … 親 庭의 命令이면 儀式을 行하였나니 … 生殖의 必要를 為하야 肉慾의 慰安 를 為하야 蓄妾制度가 流行한것이라 …

「中國廣東의 蓄妾廢止運動에 對하야, 社會革新의 一端」 24

남존여비 사상과 조선의 조혼 관습을 축첩 관습의 발단으로 지적한 이 사설이 있는 한편, 현실적 사회문제로 축첩 폐지를 통해 가 정개량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²⁵.

사회신문에서 나타난 첩 문제는 사설이나 잡지에서 토론되는

²⁴ 동아일보. 1922년 04월 30일자 사설

²⁵ "먼저 蓄妾廢止, 尹和善(家庭改良, 本社一千號紀念 「家庭으로부터 鄕土에」當選作)". 동아일보. 1923년 05월 25일

것과 다른 맥락에서 나오고 있었다.

여성 지식인이 첩/제이부인의 반대입장으로써 '제이부인은 자유연애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면, 남성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또는 일반 대중 잡지에서는 여전히 제이부인 혹은 첩을 구분하지 않고 첩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더 많았다²⁶. 특히 시문사건은 첩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인 측면에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1920~1930년대의 신문에서 여성의 범죄행위, 특히 지방에 있는 어린 신부의 살인•방화 사건들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도시에서 신식 교육을 받았던 신여성은 나름대로 자유연애를 추구하기 시작하여 강제 결혼에 저항하는 한편, 농촌 지역에서 강제 결혼과 첩을 들인 남편에 대한 저항은 보다 극단적이었다²⁷. 1933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본부를 살해한 여성중 83.3%가 16세 미만 여성이 차지하였다²⁸.

1931년에 한 16세의 어린 신부 송언련이 시가에 6차례 시도했던 방화는 모두 실패하였으나, 일곱 번째 시도했던 방화로 일가를 전소시켜 지방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건이 있었다²⁹. 신문의 제목 「男便作妾에 憤慨 媤家에 七回放火, 싀모 학대에도 못견되어 十六歲少婦

²⁶ 동아일보 1921년-1962년 기사중에서 제목에 '첩'을 사용한 기사는 591건이었고, '제이(第二)부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외국 관련 보도는 4건이 있던 반면, 국내 기사는 단 1건만 존재했다.

²⁷ 국사편찬위원회. (2005).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4장 '결혼에 비친 근대'

²⁸ 김정실, "本夫殺害의 社會的考察". 동아일보. 1933년 12월 13일

²⁹ "男便作妾에 憤慨". 동아일보. 1931년 01월 16일

犯行」 을 통해 방화 원인은 남편의 작첩과 시부모의 학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치정은 물론, 남성이 사랑에 빠지며 축첩 때문에 몰락하게 된 서술도 드물지 않았다³⁰. 1926년에 리해규라는 강원도 통천면보통학교 남성 훈도가 동료인 여성 훈도 김희주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후 여성을 첩으로 들이자 학교에서 둘이 모두 면직당했다. 또 이어서 리해규는 군수와 면장을 상대로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³¹. 첩 문제와 관련이 생기면, 치정의 서술이 따라오게 된다.하지만 개인의 치정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상 사건들에 대한 신문 제목의 서술은 항상 사건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거나, 강 상관성이 있는 요소를 강조시키려고 한다. 이와 같은 범죄는 드문 사례가 아니었으며, 남성의 작첩과 연관되며 당시의 일종 사회적 현상을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다.

「동아일보」 1925년 12월 03일-5일자 신문에 3일 연속으로 간행된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대문 감옥에서 살인범과 방화범 중 3분 의 2 이상이 여성이었다³². 이어서 여성의 극단 범죄에 대한 원인으로

³⁰ "사설, 축첩은 패가망신의 本". 조선중앙일보. 1934년 12월 16일.

³¹ "蓄妾으로 敗家亡身, 能事가 恐嚇脅迫, 축첩하였다가 실패한 교원 군수와 면당을 상대로 협박". 동아일보. 1926년 5월 30일.

³² "녀자살인범과 방화범, 남자의 삼분지이, 원인이 어느 곳에 잇는가". 동아일 보. 1925년 12월 3일~5일. 국사편찬위원회. (2005). 「혼인과 연애의 풍속

써 '조혼, 사랑이 없는 내외內外, 첩 제도, 그리고 시어머니', 이상 네가지가 제시되었다. 첩 제도의 존재가 부부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특히 아내의 질투와 분노를 제목에서 강조시킴으로써 범죄의 직접 원인으로 보도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의 대부분 처첩 갈등 사건에 대한 보도의 시각은 질투, 치정痴情의 서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심층적 권력 신장 요구를 간과했다. 즉, 빈번히 일어난 여성 가정 내 범죄는 개인 혹은 가정 측면의 비극이 아니라, 개인을 극단적 선택을 만들었던 사회 제도에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 4장 '결혼에 비친 근대'. 재인용.

제 3 절 소결

축첩이라는 오래된 관습에 대한 태도는 남성 지식인들의 논조를 통해서 사회 계급과 지적 권력의 분열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남 너평등과 근대적 문명 가정-국가 건설을 요구하는 구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연애를 통해서 본처를 떠나 첩을 들이는 것을 선택하면서 결국 이상과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다.

신여성의 등장 역시 축첩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러니한 형태로 첩 집단에 합류했다.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제2부인의 위치로 행했다. 자유 연애과 자유 결혼, '스위트 홈'의 소가정 이상, 경제문제 및 금전숭배가 모두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원인이되었다.

이것은 보부아르가 본 여성의 문제를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여성 문제는 노동 문제와 다르고, 인종 문제와도 다르다. 여성은 종족처럼 자연적으로 분포된 상태가 아니며, 노동 때문에 같은 사회적 공간에 모여있지 않았다. 여성의 종속적 지위와 상위 성별 그룹에 대한 타협은 다양한 사회 구성단위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공모를 통해 생존해왔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여성계에서는 아직 젠

더 정치 영역에 진입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집단에서만 멈춘 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방법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새로운 혼인의 형태를 스스로 추구하면서 실천했지만, 과도기라는 사회적 현실 앞에서 신여성들의 구사회에 대한 저항은 소극적이고 회피적이며 심지어자기 기만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축첩 반대 관련 법제화 시도

제 1 절 식민지 시기 축첩과 관한 법과 제도

조선의 민법제에 일본 식민통치에 의해서 새로운 사법관념 및행정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다. 1909년 일본의 간섭으로 조선에서 민족법을 반포하여 신분등록 제도가 도입되어, 1915년 8월 7일 조선총독부제904호 관보에서 이후의 첩은 가족으로서 입적 신고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법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였던 첩의 신분을 부정하였다³³.

그러나 문제는 추상적인 첩 신분을 부인하며 새로운 호적에서 공식적인 첩의 지위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첩'으로서 계속 살아왔던 여성들의 실재, 또는 등록하지 않고 '첩'을 계속 향유할 남성들의 '작첩' 행위는 당장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부•처•첩의 삼각 관계에서 첩은 타파해야 할 봉건적 존재, 비도덕적 존재인데도 때로는 본처가 '구여성'이고 자신이 '근대적 연애결혼'의 개입에 '부부애'를 실현 할수 있는 배우자로서의 합법성(legitimacy)을 얻을 수 있었던 복잡한 존재체였다. 첩의 사회적 존재감이 증가했다는 것은 1차적 통계자료가

³³ 원문은 '妾의入籍申告는 此를不可할事 但既히 受理한것은 從前되로 其取扱을할 事'로 이후의 첩의 입적 신고는 불가하지만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부족하여 단언할 수는 없으나, 1920~1930년대에 각종 명의로 첩을 들이는 남성단체는 부유층/지식인층 뿐만 아니라 하층민까지 퍼져나갔던 사실을 통해 짐작 할 수 있었다³⁴.

축첩 관습 폐지의 법제화는 관념과 실천의 양립이 복잡했던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했다. 이는 일본에서 발생한 폐첩 법제화 논쟁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 근대적 가족의 수립을 위해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삼고 폐첩 법제를 지지한 폐첩론자는 결국 원로원에서 존첩론자를 이기지 못해, 법률상의 폐첩이 일본과 조선에서 모두 해결되지못했다³⁵. 우회적으로 본처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법률이 늘어났지만 일부일처제의 완벽한 수립 또는 축첩 관습의 폐지는 조선에서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신문에서 등재한 구체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축첩한 남편에게 본처가 저항할 수 있는 법적 무기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다. 이외에 부부 동거 및 부부 관계 확인에 대한 청구 소송도 본처의 대응 방식으로 채택되었지만 승소하더라도 부부 동거에 대한 구속력이 보다 약했다는 한계가 있었다³⁶.

첫 번째 케이스는 축첩을 한 다움에 본처를 유기한 사례였다.

26

³⁴ "蓄妾한 下人自殺, 월급 십팔원을 밧는 하인이 두집 살림하기 어려워 자살". 동아일보. 1925년 8월 4일

³⁵ 소현숙, 「이혼법정에 선 식민지 여성들」, 316-318쪽.

³⁶ 소현숙, 위의 책, 341-342쪽.

1928년 경성지방법원은 축첩한 남편 김연영한테 버림받은 본처 로숙 경의 동거 청구를 지지해 두 첩을 축출할 것을 판결했다. 주목할 것 은 신문에서 등재된 판결 이유였다. 판결 이유는 "오늘날 조선사회에 서는 일부일처제도하에서도 축첩을 수긍하는 혐의가 있으나, 축첩은 인도상 불합리한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뎡의 평화를 파 괴하는 중대원인이 됨...법률상으로 볼지라도 첩과의 동거의무만은 신 의信義을 원칙으로 한 동거의무가 반드시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 를 온당하다..." 고 명의와 도리상 처의 청구의 타당함은 인증해준다. 하지만 '그(피고)를 당국자로 집행할 무엇은 없으나' 단지 '본처들이 이 판결의 례를 보아 첩 폐지운동에 한 파문을 던진 것'이라는 의미를 제시했다37. 구속력이 적은 만큼 설사 남편이 다시 첩들과 동거생활에 복귀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판례를 갖고 있어도 남편의 행위를 말릴 수 없을 것을 추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처의 청구를 들어준 이유는 애매한 부부평등 태도를 택했다는 것에 있다. 부부가 다시 동거할 수 있도록만 하는 소박한 청 구에 승소 판결이라고 할 수 있냐의 의문점 역시 남는다.

두 번째 소송 사례는 1928년 축첩한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한 본처가 패소한 건이었다. 그에 대한 판결 이유는 '축첩'사항은 1923년

³⁷ "「法律上으로도 蓄妾은 不可!」 피소된 백만장자 金然永에게 대하야, 京城 地方法院의 新判決". 동아일보. 1928년 10월06일.

7월 1일 이후 조선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민법 (2차 개정³⁸)이 규정한 이혼사유에 속하지 않고 유사한 '배우자의 중혼', '배우자의 간통', 또는 '배우자에 대한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나 중대한 모욕'이 모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했다³⁹. 축첩이란 행위 자체는 남편의 법적 과실이 아니었으므로 처의 위자료 및 이혼 청구는 허가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혼인법의 시각으로 혼인기간의 과실이 발생한다면 남녀 양쪽에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것과 달리, 당시에 '간통죄'이라는 죄명은 여성에게만 적용한다. 남편에 대한 간통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생긴 것은 1938년에 개정법이 실행된 이후로, 그마저도 남편이 본처에게 중대한 모욕을 준 경우(처가 있는 본집에서 첩과 동거한 경우가 간주됨) 뿐이었다⁴⁰.

따라서 1921년 동아일보가 보도에서 풍자적 장면이 발생한다⁴¹. 본처가 축첩한 남편이 피고로 법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한 뒤에 남편

³⁸ 1912년 실행한 조선민사령은 조선의 '관습'을 기반하여 관습법의 성격으로 축첩과 관한 내용을 간섭하지 않아고 이후 1922년 개정하고 1923년에 실행 한 민사령부터 법적 이혼제도를 도입했다.

³⁹ 「이혼청구사건」 1928년 10월 26일, 《고등법원판결록》제15권, 313~319쪽.

⁴⁰ 정지영. (2008).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⁴¹ '첩을 어더노코 도로혀 본부인보고 모 주지와 더러운 관계가 있다고 서로 갈라서자하매, 녀자는 萬여원의 부양료를 청구, 남자는 리혼소송뎨긔'. 동아일 보. 1921년 09월 09일

이 아내가 모 주지와 더러운 관계가 있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했다. 사실상 이 원고의 '더러운 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사실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1936년 전의 법률이 간통죄를 여성에게만 부여한 것이 축첩한 남편에게 좋은 반격 무기가 되었었고, 제도적으로도 남성의 과실을 묻기 어렵게 만들면서 축첩 관습을 수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처와 마찬가지로 첩 역시 축첩 관습을 수긍하고 있는 법 제도 하에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전형적인 사례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첩이 된 사건이다⁴². 나이가 많고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처녀가 당연히 본인이 첩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 법원은, 속 아서 첩이 된 여성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⁴³.

조선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았던 혼인의 평등은 사실상 부재했다. 이와 동시에 관습으로 인정받았던 축첩 행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반대가 있을 뿐이었다. 이후 1938년, 축첩을 본처에 대한 중대한 모욕으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되게 되었지만44, 축첩으로 남성을

⁴² "詐欺 娶妾으로 金琪邰氏 被訴 지금부터 구년 전에 결혼한 첩 속아서 살앗다고 위자료 청구 百萬長者에 六萬圓 慰藉請求". 동아일보, 1926년 02월 20일 ⁴³ 『신여성』. 1924년 3월호

⁴⁴ 1938년(소화 13년) 12월 13일 고등법원판결. 정지영.(2008).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 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9(9), 79-119. 재인용.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제 2 절 해방 후 1960년대까지 폐첩 법제화 쟁론

1 제헌과정 중 국가공무원법의 축첩문제 쟁론

해방 이후 미군정의 영향 하에 민주와 자유의 정신 확립과 인 권사상이 이 시기 헌법 제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의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에서 열거한 '조선인민의 고유한 자유' 중 제1조, '모두 인민은 법 앞에 평등이며,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출생, 직업, 신조의 특권을 인정치 않으며, 국제법에 의하 여 인정된 특권만이 예외가 된다'고 자유민주주의적 입헌 정신을 전달 했다⁴⁵.

해방 전의 1946년에 「부녀자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포고령」이 반포되어 공창제 폐지로 여겨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시의 러취(Ler ch, Archer L.) 군정 장관은 이를 두고 기자회견에서 '공창제 폐지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사건이 있었다⁴⁶. 미군정하에, 민주와 자유의 상징을 삼는 동시에 법 제정 과정에서 조선의 '관습'을 타파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⁴⁵ John R. Hogde 1948.4.5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 주한미군사 제 3권

⁴⁶ "부녀자의 매매만 금지, 공창제도 폐지는 아니다". 자유신문. 1946년 5월2 8일. (마정윤, 2016).

공창제와 부녀매매는 공적인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었으나, 축첩 관습에 대해서는 '정조', '집안 일'로 여겨졌으며 간섭할 시도조차 없었다. 1947년 1월 20일 남조선 과도 입법회의에서 처음으로 축첩 공무원 축출 제안을 제기했지만 제안이 부결되었다. ''그 이후 1948년 6월 26일 제헌국회에서 권태의, 박석순 두 의원이 축첩 문제를 결혼 문제으로 다루지 않다면 '우리의 미풍을 어데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가'의 의견을 발표하며, 축첩 관습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해주어 제8조가 규정한 '평등'과 충돌된다고 질의했다. 하지만 전문위원 권승열의답은 국민 모두의 평등에 대한 이해는 헌법상 추상적 개념으로 삼고첩 문제는 친족법 상의 신분이나 기타 특별법상의 신분으로써 해당 조항과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48.

1948년 7월 5일 제헌 국회에서 가결된 내용에는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조항이 헌법 제20조에 신설되었지만, 축첩에 대해서 는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았다⁴⁹. 또 이어서 1949년 7월에 다시 축첩

-

⁴⁷ 헌정사 자료 DB.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十六號. 1947년 01월 20일. http://db.history.go.kr/id/cons_001_0070_0010_0130 accessed 2023.5.1

⁴⁸ 헌정사 자료 DB. 제헌헌법. 2장 제헌국회 속기록으로 보는 헌법제정 과정. [1회 18호] 2장 - 법률상 평등과 신분 문제 관련 답변(8조) http://db.history. go.kr/id/cons_001_0020_0010_0020_0010_0130 accessed 2023.5.1

⁴⁹ 헌정사 자료 DB. 제헌헌법. 2장 제헌국회 속기록으로 보는 헌법제정 과정. [1회 25호] (20조) - 혼인 및 가정에 관한 조항 추가 제안 - 가결됨, 20조

공무원의 자격과 관해서 논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축첩은 '오랫동안의 인습', 당장 폐지하면 '사회질서의 문란을 일으킬 것'으로 반대되어 '축첩과 공무는 무관하다'라는 결론이 지어졌다⁵⁰.

이렇게 몇 차례의 논의 끝에 축첩 관습 폐지에 있어서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49년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게 만든 것은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시위 및 연설 활동이었다⁵¹. 하지만 이 전환점은 입법적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여성 단체들의시위의 목적은 99명의 의원이 함께 이 대통령에게 보낸 건의서에 의해서 달성한다는 것이었다⁵². 이승만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서축첩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법제처장에게 축첩 방지법 제정에 관한지시를 했다⁵³. 하지만 그 후 신형법과 신민법의 제정 및 수정은 6•2 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2 법률혼주의로 축첩은 중혼죄는 아님

_

신설 http://db.history.go.kr/id/cons_001_0020_0010_0020_0010_0360 acce ssed 2023.5.1

⁵⁰ "첩과 공무는 무관, 蓄妾 公吏 추방 동의 부결, 첩 둔 관리에 희소식". 자유 신문. 1949년 07월 22일.

⁵¹ "축첩공무원 추방 대통령에 99의원건의". 경향신문. 1949.12.11. (마정윤, 20 16)

⁵² 이 부분은 여성단체의 사회운동 부분에서 다시 분석하고자 한다.

⁵³ "1남 1녀는 사회기본 蓄妾방지법 제정 李대통령 인도주의에 호소". 자유신 문. 1949년 12월 11일

축첩 반대론자는 간통쌍벌죄뿐만 아니라 축첩에 대하여 중혼 죄 판정을 할 수 있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신형법 제정 과정은 간통쌍벌죄의 토의 과정과 비슷하게 보수 적 '폐지론'자와 축첩 반대 입장에서 진보적 태도를 갖는 '보완론'자의 대립으로 결성되었다⁵⁴. 중혼죄의 조항은 1951년 정부초안에서 제258 조 "배우자 있는 자, 거듭 혼인한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혼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그후 1953년 7월 3일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진갑 등 의원 19인이 제출한 수정안('변진갑안'으로 약칭함) 은 축첩을 중혼죄로 간주하고 단 본처의 의지에 의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요구했다⁵⁵.

일본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영향 하에 호적 제도의 등재가 혼인을 법적인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호적 등재에 의한 법률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했으나 형식혼주의, 사실혼주의까지 3가지 유형이 함께 존재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협의의 법률혼주의'라고 주장한 폐지론자의 입장에서 축첩은 간통죄로 처벌하되, 중혼으로는 간주될 수 없는 입장이었다

⁵⁴ 조인현. (2020). 풍속범죄의 성립경위 연구 -가안편제(假案編制)의 국제규 범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사법, 1(51), 393-432.

⁵⁵ 신동운 편. (2007).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7쪽, 290-292쪽.

56

최종 표결을 통해서 원안과 변진갑 안이 모두 미결되었고, 중 혼죄는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에서 삭제되었고 폐기하였다 57 .

3 형법상 축첩의 간통쌍벌죄 적용 쟁론1953년 신형법이 개정되기 전 일본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온 형법 중 간통죄는 '유부有夫의 부婦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간자相姦者 또한 같다. 전항의 죄는 본 부夫의 고소를 기다려 이를 논한다.'의 조항에 따라 여성에만 부여된 죄목이었다.

1949년에 폐기하고자 시도했던 시기가 잠시 있었다가 다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처음에 법전편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쌍벌론이제기되자, 이로 인해 간통행위로 처벌 받을 남자가 '견디기 어렵다', '남녀가 몸적•지적 차별의 선천적 존재'라는 이유를 갖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반대 입장이 나왔다⁵⁸. 논의 끝에 11월 12일에 간통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⁵⁹.

한국전쟁의 발발로 신형법의 개정이 멈춘 이후, 1952년에 헌법

⁵⁶ 신동운 편. (2007).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3-294쪽.

⁵⁷ 위의 책. 299쪽.

⁵⁸ 엄상섭. (1950). 간통죄철폐와 그 사회적 영향 민성 제6권 제2호, 49쪽.

⁵⁹ "법전편찬위원회, 간통죄 폐지를 결정". 국도신문. 1950년 05월 07일; "간 통죄 폐지를 둘러싼 법조계의 의견". 국도신문. 1949년 11월 17일.

제8조 제1항의 국민 평등사상과 상충되며, 제12조 '혼인은 남녀동등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아 위헌 판정을 내렸다. 1953년에 간통죄 조항이 재논의되었다. 이때 정부가 법제처를 통해서 초안을 제출하여 남녀 모두에게 간통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간통쌍벌죄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몇 차례 수정안 토의 끝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53년 10월 3일 부터 시행했다 ⁶⁰. 여권신장의 측면에서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간통죄를 유지하되 적어도 남녀 쌍방에 대한 처벌한 이상, 본처가 축첩자한테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이 쌍벌론자의 입장이었다⁶¹.

1953년 형법에서 간통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정형법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 姦)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⁶⁰"간통죄, 남녀평등을 보장한 헌법정신 위배 여부로 논란". 동아일보. 1953년 1월 2일; "女子만의 處罰對象은 違憲 現行姦通罪 들어 「憲委」에 提請申請". 동아일보. 1953년 01월 03일. (신동운, 2007).

⁶¹ 신동운 편. (2007).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9-281쪽, 449쪽. 입법워원 변진갑, 방만수(方萬洙), 박순천(朴順天) 등은 남녀평등의 출발점에서 쌍벌죄의 개정제안 주요 건의자였다. 간통쌍벌죄는 '박순천법'이라고 칭하게 된다. 김경일 외. (2015).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한국학주앙연구원 출판부. 154쪽-160쪽.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1957년 간통쌍벌죄를 적용해서 축첩자 남성을 처벌하려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였다[®]. 이유는 바로 본처가 소송을 제기한 다움, 법원이 원고가 10여 년 동안 피고의 축첩 생활을 알고 있다는 것을 '종용'으로 간주하어 따라서 남편에 대한 고소가 무효화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수정안 논의에서 '아들이 없어서 남편이 첩 얻는 것을 본처가 용서할 거시라는 뜻이에요'라는 발언을 한 이종형 의원과 같은 관점[®]은 이 사건의 결말을 예언한 듯이, 여성의 법적 의지는 소송을 제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더라도 이전의 인내를 종용으로 묵인되어 무효화되었다. 법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지만, 현실 상황이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을 또한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간통쌍벌죄는 혼인외 남녀 관계를 징계함으로써 축첩 행위를 우회적으로 부정했지만, 실제상 축첩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이 아 니며, 사법 실천에서 여성의 혼인 내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역부족 이었다. 간통쌍벌죄는 축첩 반대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지만, 공소죄가 아닌 이상 축첩 폐지법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

⁶² "蓄妾姦通에 첫 判例 新刑法施行 以前부터 繼續되어 온 行爲 이미 公訴權 喪失「從容·宥恕」로 棄却判決". 동아일보. 1957년 07월 13일

⁶³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16회 제16호. (문현아, 2017)

따라서 여기서 축첩 관습의 소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 며, 1960년대 대중의 축첩 반대 실태를 재고찰해야 한다.

제 3 절 소결

이 시기, 축첩 반대는 드디어 법제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의해 첩의 신분을 호적 상 등재를 부정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의미에 그쳤을 뿐이었다. 그 이후의 이혼 판결 또는 처의 청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회적으로 처권을 보장해준 판결에서 볼 수 있 뜻이, 축첩 관습은 뿌리 깊은 조선 사회에서 제거가 되기 어려웠다.

해방 이후 축첩 남성에 대한 징계 시도는 형법상 간통쌍벌죄 발효에 대해서만 성과를 얻었다. 헌법에서 혼인의 순결 또는 국민의 남녀평등 정신을 규정했지만, 보수적인 사법계 특성 상 이는 명문으로 만 존재했을 뿐이었다.

축첩을 반대하는 의원이 1953년 형법 제정 과정에 나섰고, 이에 대한 발의를 했지만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역부족이었으며, 이에 따라 간통쌍벌죄는 혼외 남녀 관계만을 징계함으로써 축첩 행위를 우회적으로 부정했다.

실제상 축첩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기에 간통쌍벌은 본처 스스로 친고해야 축첩한 남편에게 벌을 줄 수 있고, 공적으로

벌을 줄 수 없었다는 상황에 그쳤다는 제한 또한 있다.

간통쌍벌죄는 축첩반대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지만, 공소죄가 아닌 이상 축첩의 폐지법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 분이었다.

제 4 장 해방 후 여성 단체의 축첩 반대운동

제 1 절 축첩 공무원 축출 운동

축첩 공무원 축출 사건의 시작은 1947년 남조선 과도입위원회 입헌 과정에서 발단이 되었다.

전국여성총동맹에서 청원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첫째, '우리 민족'적인 민주주의 국가 건설 요망, 둘째, 민생문제 해결 요망, 셋째, 미래의 법률이 남녀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현행 법률 중 남녀불평등 조항을 즉시 철폐한다는 요망, 넷째, 의원 등 사회지도층에서 친일파, 또는 '창기를 농락하고 축첩하는 자'를 축출시킬 것을 갈망함, 다섯째, 료정(料亭)과 창기를 폐지하기를 갈망함"이었다⁶⁴. 강력한 정서를 담긴 청원서 내용은 광범위하게 주제를 담기에 제안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이어서 이 청원에 대한 토론은 결의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갔다.

그 이후 다시 1949년 7월 헌법 제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과정에서 제안 형식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이미 헌법이 제정되어 있기

⁶⁴ 청원서 내용이 본고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다. 헌정사 자료 DB. 南朝鮮過渡 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六號 1947.1.20 http://db.history.go.kr/id/cons_001_0 070_0010_0130 accessed 2023.5.6.

에 헌법 제20조 '혼인의 순결' 및 제8조 '평등'의 내용과 어긋난 것으로 축첩 관습 폐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1949년 7월 21일 정준의원 외82인이 제출한 국가공무원법에 축첩 공무원의 자격 박탈과 관련한 발의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져 최종 재석 141명 중 53대 83표로 부결되었다.

이 결과에 대해 분노한 여성단체들은 28일에 시위를 벌였다. 이 날 "문명국가로서의 축첩제도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없는 수치"라며 대한부인회 회장 박순천이 700~800명 여성이 모인 시청 앞에서 연설했다. 그 다음 김분옥, 조여인, 이옥성 등 이어서 연설을 발표한 후 결의문을 국회의장에게 전한 뒤 해산했다⁶⁵.

29일 자유신문에 등재된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國會議員 諸公께

금번 국회에서 연 三일 걸쳐 토의된 축첩문제 부결에 대하여 우리 여성은 항의한다. 국가가 초비상 시기에 있는 국정을 감안하여 여성문제는 차기를 위해 기다리며 자숙의 태도로 함구불언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八十二의원이 찬성 제의한 법안이 이후 무기명 투표에서는 五十三명의 찬성이라는 기묘한 숫자로 부결된 축첩이란 문제는 장구한 시일에 억압을 당한 우리들에 대한 짓궂은 충동이라고 본다. 우

⁶⁵ "蓄妾 공무원 숙청을 요구하는 여성들, 市公館에서 궐기대회를 개최". 경향 신문. 1949년 07월 29일.

리 여성을 옹호한답시며 이 문제를 제기한 八十二의원들은 과연 전부가 첩이 없는 분들이었고, 이를 부결한 의원들은 첩이 있단 것인지 의심하는 바이다. 자신들의 연봉을 가결할 때의 열정과 일사천리(一瀉千里)식 만장일치의 행위는 가관이었는데, 국민의 반수인 우리 여성들이의원들을 선출할 때 결코 심심풀이로 염천에 그늘 밑에서 부채질하는격으로 여성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보넨 것은 아니다."66

이와 같이, 결의문은 82명의 의원이 같이 제안을 했으나 결국 53표만 나온 점을 의심했다. 이 시위를 걸쳐 축첩 공무원 추방에 대해 동의한 의원 수 가 많아졌다. 그 후 앞선 장에서 언급한 99인 건의가 이승만 대통령에 전달되었고 분위기가 역으로 전환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박순천의 연설에 순응한 뜻이 기자회견에서 박순천의 연설사와 비슷하게 축첩은 문명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⁶⁷. 법제적으로는 법제처에게 초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법제상 축첩 관습 폐지와 관련 법은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속에 1949년 12월 이승만 대통령 담화문발표부터 공무원 해직과 경찰 해임이 연이어 진행됐다.

이승만 정권기 축첩자 계층은 전과 달리 새로운 형상이 있었다.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 공적 권력조직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를 취

⁶⁶ "作妾 공무원 추방, 천여 여성이 궐기 요청", 자유신문, 1949년 07월 29일

⁶⁷ "李大統領 記者會見 啓蒙으로 舊習打破 蓄妾은 文明人의 羞恥". 동아일보. 1949년 12월 10일.

독한 자들이 축첩의 주요 행위자였다. 이에 따라 축첩 경관이 축첩 관습 타파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동란을 겪은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첩 또는 창기로 팔려간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또한 전쟁 때문에 남성이 감소한 당시, 남녀 비율의 불균형으로 축첩 현상이 조장되기도 했다⁶⁸.

1950년 ~ 1959년 기간 동아일보에서 보도 된 축첩 경관 관련기사가 12건에 달했으며 축첩으로 인해 파급된 경관의 직급은 일반 경관부터 장교까지 포함했다⁶⁹.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축첩 공무원 징계를 약속한 뒤, 1953년에 신형법 제정 과정에서 원래 1949년 이미 폐지되었던 간 통죄는 정부초안에서 다시 쌍벌죄로 신설되었고 박순천 의원의 수정안 과 함께 표결을 했다. 최종 통과된 간통쌍벌죄 조항은 이에 의해 '박순 천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2 축첩 국회의원 반대 운동

이 시기에 행정명령으로 처벌된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⁶⁸ 1935년 20대 남녀 성별비 103.8:100 에서, 1955년에 82.5:100로 남성의 대폭 감소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김은경, 2007)

⁶⁹ 동아일보 1950.04.01, 1950.06.24, 1956.07.26, 1956.09.12, 1956.09.17, 1956.09.24, 1957.03.16, 1957.05.31, 1958.03.13, 1958.11.28, 1959.07.13. 기사 내용은 축첩경관의 자퇴•색출해임•비관자살 등이 있다.

전체 인원이 아니었고 축첩 경관에만 적용되었으며, 축첩방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이 논의는 4•19혁명 후 이승만의 망명으로 중단되었다가, 1960년 7•29 총선거를 앞두고 7월 14일~27일 동안 여성계에서 축첩 국회의원에 대한 반대 시위 전국 여러 곳에서 벌어지면서 다시 제기되었다". 결국 축첩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1961년 2월 1일에 국무원사무처의 지시에 의해 시작했다".

당시 축첩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아야 축첩 문제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여, 7•29 총선 전 한국 YWCA 연합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연합회를 결성하고 7월 19일 '축첩자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 '축첩자에 투표말라, 새공화국 더럽힌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종로에서 시위를 벌었다". 또는 여성 후보자의 출마로 여성에게 '자주적 투표권 행사'등 여성대중에게 정치적 계몽을 전파했다"3.

당 해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박순천 한 명 뿐이었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같은 해 8월 최은희가 이끄는 여권실천운동자클럽이 결성되며 박순천을 사회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서, 또는 이태

" "敎人들이 示威 蓄妾出馬者反對(釜山)". 동아일보. 1960년 7월 20일

[&]quot; "蓄妾公務員을 懲戒 月末까지 끝내도록 指示". 동아일보. 1961년 2월 7일.

⁷² 이화분. (2009).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⁷³ 박순천, "가정의 의견을 따르지 말라" 『여원』, 1960년 8월호, 86쪽-89쪽. (윤정란, 2010)

영을 법무부 차관에 기용하기를 바라는 청원서를 국무총리 장면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를 했다(윤정란, 2010; 한국부인회총본부, 1986). 그러나 결과적으로 청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모든 여성단체는 해체되었다.

제 2 절 여성단체의 신민법 개정운동

1 여성단체 운동 방향의 변화

앞장에서 혼인의 순결과 남녀평등 등 헌법상 조항은 이미 축첩의 성격이 '위헌'이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했다. 여성단체의 활발함과 여성의원이 젠더 정치 영역에 등장한 것은 간통쌍벌죄를통해서 축첩 행위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간통쌍벌죄의 축첩 반대 적용에는 제한이 많았지만, 처음으로 법을통해 축첩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또는, 1950년대에서 행정 권력에 의해서 축첩공무원•경관•교원 등의 축출은 전 사회의 축첩 반대 의식을 제고해주었으며, 축첩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타격은 사회적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할 수 있을 만큼, 여성단체의 활동 중점은 민법 상 가정 내 여성 지위 향상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제 2 대 국회의원인 박순천은 이어서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과 함께 가족법 개정운동에 나섰다. 이번 운동도 비슷한전략을 사용했다. 즉, 여성단체과 깊은 관계를 유지한 여성 위원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여성단체는 사회 각계에 여론 공세를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박순천 위원 등이 발의한 딸의 호주권(입부혼入

夫婚을 통한 호주권 취득), 여성의 재산 상속권 등의 조항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고 여론도 큰 반응이 없었다⁷⁴.

2 적모서자관계 문제부터 혼인외의 자 입적 문제까지

1954년 10월 26일, 정부에서 한국전쟁 발발하기 전의 민법 초 안(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설치한 법전편찬위원회가 기초한 민 법전편찬요강)을 다시 정리하며 국무회 의결을 거행한 "정부제출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1956년 9월 5일 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되어, 민법안 심의 소위원회를 결성한 후 '국회 수정안"을 제정했다.

1957년 11월 5일부터 국회에서 민법 최종 결의를 위해 '정부 안', '국회수정안', 그리고 국회가 받은 여러가지의 의원수정안을 함께 심의하였고, 1957년 12월 17일에 최종 민법안인 '신민법'을 확정하며 통과했다.

이 긴 과정에서, 이태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한부인회, 한국 YWCA등 여러 개의 여성단체는 여성단체연합회를 조직하여 총 4회의 청원/진정서/건의서를 국회 또는 관직자에게 제출했다.⁷⁵ 그 내용은 처 의 무능력제도 폐지, 부계혈연 중심주의의 동성동본 혼인 금지 철폐,

48

⁷⁴ 김수자. (2014).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의 탄생. 168쪽-169쪽.

부부별산제, 여성의 상속순위 향상 등 남녀평등을 기반한 수정 요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물계에는 '관습존종론'을 가진 김병로 위원장에서 비롯한 고위급 남성 관료들과 유림계가 대표한 보수적 사회단체 등이 존재했다. 1957년 4월 7일에 열린 공청회에서 "남녀평등을 완전히 하자면 … 가족제도는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점진적 개혁론' 입장을 가진 일파도 존재했다⁷⁶.

최종 1958년 2월 22일에 발표된 신민법은 '점진적 개혁론'의 주장을 과반수 통과한 결과로 부부별산제를 인정해주는 진보적 일면이 있는 동시에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여 청구권 불인정', '동성동본혼 금지 유지', '혼인외 자 출생 입적 허가'등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서자 입적'에서 '혼인외 자 입적'까지의 용어 유변은 일정한 시대성을 보여주는 한편,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 부계혈연 중심주 의에 대한 영위는 변화하지 않고 현대까지 존재한다.

⁷⁶ 국회사무처. (1957). 국회속기록 제29호. 1957년 11월 5일.

⁷⁷ 정광현. (1967). 한국의 가족법 연구 부록편; 정현주.(2004). "대한민국 제1 공화국 여성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수자. (2014). 대한민 국 여성 국회의원의 탄생. 193쪽.

제 3 절 소결

이 시기에 여성 사회운동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시위 및 청원 등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기구의 운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 명령으로 일부분 공무원을 처벌되었지만, 4•19 혁명 이후 관련논의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외에 여성단체는 진일보하게 국회의원을 겨냥하며 여성의 힘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들어갈 것으로 목표를 했으나 성과는 좋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민주정치의 참여방식을 선택했으나 최종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의지에 의해서 축첩 공무원 축출 운동이 운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행정명령을 통해 얻은 성과은 한 순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나아갈 시도를 시개적 배경하에 평가 를 한다면, 진보적이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축첩의 논쟁이 자체의 정의로부터 유죄화 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축첩반대 시기도 그렇고 그 이후 신민법 개정운동에서도 '유죄화'를 실현할 수 없는 원천이 된다.

제 5 장 결론

첩은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유한 여성의 가정 내부에서 존재하는 차등적 신분이었다. 사실상의 혼인 상태에 있고 혼인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적서구분으로 처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차등성이 드러난다.

보브와르가 제기한 제이의 성에 대한 설명처럼, 여성은 남성에 의해 만든 제2등의 사회성별을 가진 '차등의 인간"인 만큼, 첩이란 신분은 처의 대조 처럼 만든 '차등의 처'였다. 생식기능 또는 향락의 도구로서 불완전한 기능을 가진 첩이 '적서(嫡庶)'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신분의 불완전성을 재현했다.

이러한 신분의 소멸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라졌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도가 본 연구의 핵심이었다.

한국의 근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하지만, 단지 여성의 시각에서 혼인의 평등을 찾기 시작한 시대를 '근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것은 신여성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 2 장에서 재현한 신여성들의 모습은 복잡했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그들이 직면하는 사명은 '개조'였다. 민족국가를 살리기 시급한 시대에서 남성 지식인은 여성에게 개인의 개조, 가정의 개조, 최

종적으로 국가의 개조으로 근대화를 실현하려는 사명을 부여한다. 낡은 질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탐구하려던 욕망은 자유연애를 통해 자기해방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신여성들이 축첩을 반대하는 시도로 변화했다. 다만 자유연애를 통해서 제이부인라는 명의 하에서 첩이된다는 운명은 역설적이었다. 당시의 사회에서 아직 여성에게 교육을 시켰지만, 교육의 목표는 여전히 근대적 현모양처에 설정되어 있어서 신여성이라는 존재는 사회제도를 흔들기에 역부족이다고 할 수 있다. 또하나의 현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체가 특권인 만큼 교육을받지 못한 채 조혼한 어린 여성들은 극단적 범죄로 억압적 혼인/가족제도에 대해 저항했던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신여성들의 축첩 반대는 계몽적이다. 혼인의 순결과 평등을 실현하고 싶은 그들의 방법은 사상의 전파과 개인의 실천뿐이었다. 소수자였던 그들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상술한대로 순 결과 평등을 실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제이부인이 된 신여성의 사례가 영향력이 컸다.

두 번째는 당시 현행법에 의존해서 축첩한 남편에게 의무청구 또는 미약한 징계를 하는 단계였다. 법이라는 국가폭력 기구를 사용 하여 불공평한 혼인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일본 식민지 시기 부터 시작했으나, 이는 여러 번의 전쟁 때문에 중단되어 지연되었다. 단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여성은 축첩한 남편에게 다시 동거 의무를 지게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었던 저자세의 시대였다.

1950년대는 여성이 이혼을 제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축첩한 남성 집권자들을 낙선시킬 수 있는 시대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세 번째 단계인,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성들의 젠더 정치의 시대였다.

이상 3단계론을 도출한 다음, 연구문제를 답할 수 있다.

"축첩 제도가 엄연히 행세를 하고 남자에게만 이혼이 자유가 있는 한 여성해방이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공문서와 말만의 해방으로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여성의 해방은 여성의 땀 섞인 노력을 통해서야 오는 것이니 겉 해방에 날뛰지 말고 우리의 실력으로 참 해방을 만들자."

이태영이 외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운도으로서 (의) 운동"⁷⁹처럼, 축첩 관습의 종말은 근대 법제화의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함께, 가족법 개정의 처권 신장과 함께, 그리고 젠더정치의 활발한 여성운동과 함께 도래한 결과였다.

53

⁷⁸ 황기성. (1950). "3•1운동과 여성해방" 부인경향. 1950년 3월호.

⁷⁹ 이태영. (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참고 문헌

연속간행물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자유신문』 『경향신문』 『국도신문』 『신여성』

『여원』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2005).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 국사편찬위원회 편.

전미경. (2005). 근대계몽기 가족론과 국민생산 프로젝트 [전자자료] / 전미경 지음. 서울: 소명출판.

김경일 외. (2015). 한국 근대 여성 63 인의 초상 / 한국학주앙연구원 출판부.

고등법원판결록 제 15 권

신도운 편. (2007). 형법 제·개정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주한미군사 제 3 권

이화분. (2009). 가족법 개정운동 60 년사 / 집필: 이화분.

한국부인회총본부 편. (1986). 한국여성운동약사 : 1945-1963 년까지 인 물중심 /

김수자. (2014).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의 탄생 / 김수자 지음.

이태영. (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출판부 신동운 편. (2007).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6쪽.

茂呂美耶. (2015). 大正日本: 百花盛放的新思維, 奇女子 台灣: 遠流出版.

Engels, Untermann, Ernest. (1902).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 by Frederick Engels; Translated by Ernest Untermann.

Choi, Hyaeweol. (2013). New Women in Colonial Korea: A Sourcebook / Compiled and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by Hyaeweol Choi.

논문

김경남. (2021). 근대 계몽기 신문 소재 논설의 여성문제와 여자교육 담론의 분포와 의미. 인문과학연구, 70, 5-31.

김지영. (2005).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Hyŏndae Sosŏl Yŏn'gu, (27), 51-82.

마정윤. (2016). 해방 후 1950 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 관습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8(3), 155-186.

박경. (2012). 개화 지식인들의 조혼(早婚)에 대한 인식 - 『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6(0), 69-96.

박은숙. (2017). 근대적 결혼 기획, 유길준의 「婚禮의 始末」: 근대적 가족·국민 형성의 출발점. 한국근현대사연구, (82), 7-35. 한정신.(2005). 한국 사회와 여성 교육. 121 쪽.

정경은. (2012). 1950 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계몽과 수치심의 관계 고 찰. 한국학연구, 42, 287-310.

전미경. (2001). 개화기 축첩 관습 담론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19(2), 67-82.

최기숙. (2014). '사건화'된 일상과 '활자화'된 근대: 근대초기 결혼과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한성신보』(1895-1905) '잡보'란이 조명한 근대초기의 결혼생활 스케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231-285.

오지석. (2021). 근대전환기의 기독교 혼인윤리 성립과정고찰 -소안론과 배위량의 논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 337-369.

이숙진. (2010).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 -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35-58.

이숙진. (2014). 기독교신여성과 혼인윤리 -박인덕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윤리, 29, 345-375.

이영수. (2012).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혼인유형과 혼례식의 변모양상. 아시아문화연구, 28, 151-184.

이행미. (2021). 여성이 예속되지 않을 새로운 가족을 위한 고투 - 나혜석의 「이혼고백장」(1934)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30, 179.

정지영. (2008).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 1920-1930 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9(9), 79-119. 박정애, 1910~1920 년대 초반 여자 일본 유학생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 문, 1999.

박정애. (2000).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1910~1920 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 (11), 46-63.

정지영. (2006). 1920-30 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22(4), 47-84.

이숙진. (2010). 초기 기독교의 혼인담론 -조혼, 축첩, 자유연애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2), 35-58.

옥성득.(2002).초기 한국교회의 일부다처제 논쟁.한국기독교와 역 사,(16),7-34.

김은경.(2007). "1950 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문경란.(1988). 미군정기 한국여성 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현아. (2017). 현대 간통죄 판례와 결혼관계 내 여성의 지위 변화 분석.여성사학회, 27(27), 193-218.

조인현. (2020). 풍속범죄의 성립경위 연구 -가안편제(假案編制)의 국제 규범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사법, 1(51), 393-432.

신영숙(1986), "일제하 신여성의 연애●결혼 문제", 「한국학보」 12-4, 182-217 쪽.

윤정란. (2010). 4월 혁명과 여성들의 참여 양상 - 여성신생활운동과 장면정권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2(12), 69-110. 李笑野,XiaoyeLi.(2010).释《周易》中"妾"的观念.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01),33-37.

Kim Keong-il. (2014). Feminist Ideas of Intellectual Women of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the New Wome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7(1), 159-185.

Abstract

A study on the abolition of concubine in modern Korea

LI Yan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focused on the abolishment of concubinage in modern Korea, which an issue started from Sin-Yosong in 1920s until the early Korean feminists acted with social movements fought for legislation changes in 1950-1960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o played against the concubiange system, what they did for anti-concubiange, and for what reason they succeeded or failed in their time, using texual anylysis, this study observed historical resources contained news, magazine and records of the legislative process from 1922 to 1962.

Women's activism against concubiange went through three phases: In the 1920s and 1930s, the 'new woman' who conducted modern education, the operation of the law that relied on colonial modern leg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women's movement that allowed women to increase their power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rough the power of gender politics in the 1950s and 1960s.

After three stages of struggle, it was to be women-initiated social movements in the streets that called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t and

finally sounded the bell for the end of concubinage.

Keywords: Concubinage, Modernity, the New Woman, Gender politics, T he Abolition of Concubine

Student Number: 2021-24716